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송경택,
윤종복, 이상욱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개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등 지정
(안 제10조의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있다.”를 “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	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에 분임 자료 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통상 분임 공무원 지정에 수반되는 별다른 비용 발생요인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